

## 판례를 통해 본 기업인의 공인 여부와 명예훼손



“홍보인들은 늘 오보에 대응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소송은 사실 기자들에게도 부담이다. 어쨌든 데스크 또는 책임자를 대동해야 하고, 회사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다. 보복 기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기자들이 이미 지난 사건의 보복 기사에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다.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본다.”

지난 11월 27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있었던 ‘2019 홍보 전략 워크숍’에서 ‘오보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 손재화 변호사는 “가만히 당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법적 구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피해를 입었다면 일단 언론사와 뉴스포털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잘 이행되질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로 가는 경우가 많다. 언중위는 한마디로 협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협상, 즉 조정이 불성립되면 그

내용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 기억할 것은 가능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는 것이 좋고, 포털 사이트에도 정정보도로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민사소송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소송과 민법에 따른 소송으로, 기사삭제 청구소송이나 보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외에 인격권(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을 위해 침해행위 금지(기사삭제)를 구할 수도 있다”고 명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인정하고 있다. 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도 가능하다.

법률적으로 공인인 기업인이거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된다면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인은 공인으로 봄야 하는가?

판례를 통해 본 공인 여부는 아래와 같다.

기업인이 공인인 경우	기업인을 공인으로 보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내 유무선 통신과 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KT 회장</li><li>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li><li>대통령의 조카사위로 추진한 사업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세인의 관심을 받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li><li>국내와 미국에 개설된 100개 이상 규모의 치과병원 네트워크의 대표원장으로 여러 이슈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 다수의 관심을 받아 주목을 받은 치과원장</li><li>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대표이사</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횡령, 배임 의혹을 받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인 회사의 대표이사</li><li>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하고 7억 9천만원을 증자한 IT회사의 대표이사</li><li>기업 대표이사의 처</li></ul>

이어서 손 변호사는 기업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판례와 법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mailto:susie@kaa.or.kr)

기업인의 사생활 보도에 대한 판례 요약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판례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기업 회장은 경영 등과 관련해서는 공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교제하는 여성은 공인이라 할 수 없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서의 의혹을 모욕 경멸의 의도에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 서라고 볼 수 있다 (부산지법 2018고정767 판결)</li><li>대기업 회장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공인으로 보기는 어렵고, 내연녀의 학력, 성관계, 출산 여부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며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8고정1 판결)</li><li>유명한 기업 회장에게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62121 판결)</li><li>업계에서 빼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공적 인물은 아니고, 사업가의 결혼, 양육 등의 사생활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는 공적 인물로 볼 여지가 크고, 사업활동 및 사생활이 남다른 점이 있어 언론 매체에 자주 소개되거나 자신이 자발적으로 언론을 통해 선전, 공포함으로써 일반 대중에게 사회 저명인 사로 인식될 경우에는 사업활동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생활은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47227 판결)</li><li>대통령 방문 하루전 기관장 4인이 기업인들과 내기골프를 하고 식사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창원지법 2009가합9836 판결)</li><li>내밀, 비밀영역으로 볼 수 있는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지만, 사건 보도 당시 장자연의 자살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에 제기된 의혹은 연예계 구조적 병폐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2나15 판결)</li><li>기업인의 명예를 훼손한 보도라도 00저축은행이 부실화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된 보도로, 중요한 공적 관심 사안과 관련이 있고 보도의 목적 역시 공익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6497 판결)</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법원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경우 불법행위로 보고(대법원 1966)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고 판결함</li><li>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이 모욕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 사실 왜곡의 공표행위는 불법행위로 본다 (대전지법 2016가단223156 판결)</li><li>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에 비추어 공인과 유사한 판단기준이 적용되지만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감정적 단정적 표현방법 등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09가합22199 판결)</li><li>의료기제조회사를 상대로 의사가 민사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고 분쟁내용과 관련 없는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으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00나50208 판결)</li><li>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주식회사와 동일성을 가진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 행위가 있다하여 주식회사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2017가단220274 판결)</li><li>방송에서 ‘유력 일간지 대표’ ‘OO일보 대표’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국내 유력 일간지 대표로서 신인 연기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에 장자연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시청자는 그 대표뿐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도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될 것 이므로 이 방송으로 인해 OO일보 대표와 회사의 사회적 평가도 침해되었다고 본다 (서울고법 2012나15 판결)</li><li>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 표현으로 허위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비방으로 인정된다 (서울서부지법 2014고단1168 판결)</li><li>허위사실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DART에 공시하게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3고단9 판결)</li><li>경쟁사 직원의 과로사에 관해 받은 문자메시지를 사실 확인 없이 퍼트린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법 2016노4605 판결)</li></ul>